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 제1760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으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용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용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용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 사업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생계비의 용자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용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신청근로자의 소득(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한다.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용자)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 ----- ----- ----- -----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범위, 용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 ----- ----- -----.